

의안
번호

129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6. 07.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129호

다. 제출일자 : 2023. 05. 23.

라. 회부일자 : 2023. 05. 25.

2. 제안이유

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 및 방과후 “놀이”와 “쉽”을 통한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서 시립 거점형키움센터를 포함하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나. 길음소리마을센터 내 성북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신규설치함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 설 명 :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2호점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삼양로9길 14-7 길음소리마을센터 2~3층
- 시설규모 : 196.1㎡
- 아동정원 : 30명

나.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

다.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기관으로 가능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간 선정위원에서 심의·결정

마. 위탁사무의 범위 :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관리
-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한 사업 등

4.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서울특별시 성북구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12호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우리동네키움센터 12호점이 2023년 10월 이후 신규 설치 예정임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위탁시설 현황 및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음.

< 대상시설 >

유형	위치	규 모	정 원 (명)	종사자	개소시기 (예정)	소유자	비고
일반형	삼양로9길 14-7, 길음소리마을센터2~3층 (길음1동)	196.1㎡	30명	3명	‘23.10. (예정)	서울 특별시	신규 설치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제1차 공간확정 심의 결과 선정 통보(市→區, 2023.4.4.)

<우리동네 키움센터 12호점 설치비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시설비 합 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현판설치비	설계비	소요예산
	소 계	국	시	국	시	시	국·시·구
208,536	165,536	22,500	143,036	30,000	3,000	10,000	운영비: 18,600 인건비: 141,024

다. 법적근거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온종일 돌봄 조례”라 함) 제11조제1항²⁾에 구청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³⁾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키움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되고, 현재 성북구에 설치된 키움센터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⁴⁾,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및 제10조제2항⁵⁾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 사료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